

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
예비비 지출 승인안

심 사 보 고 서

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보고 순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결산안 심사 개요 | 1 |
| 가. 심사경과 | 1 |
| 나. 결산의 의의 | 1 |
| 다. 관련 법령 | 2 |
| ② 2022회계연도 결산 현황 | 3 |
| 가. 세입결산 현황 | 3 |
| 나. 세출결산 현황 | 7 |
| ③ 주요 심사사항 | 9 |
| 가. 순세계잉여금 발생 | 9 |
| 나.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| 10 |
| 다. 예산 이용 · 전용 현황 | 10 |
| 라. 예비비 지출 현황 | 11 |
| 마. 예산 이월 현황 | 16 |
| ④ 심사결과 | 1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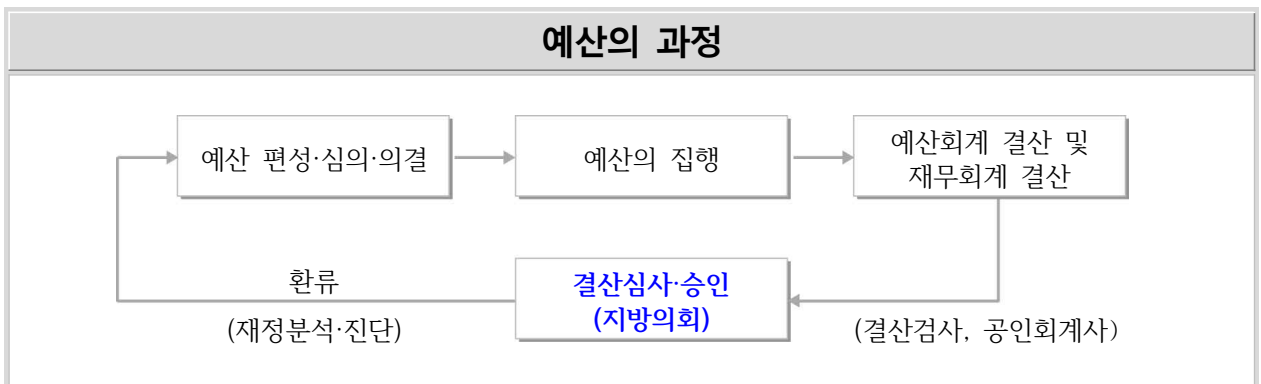
1 결산안 심사 개요

가. 심사경과

- 제출자 : 화성시장(회계과장)
- 제출일 : 2023. 05. 26.(금)
- 회부일 : 2023. 05. 31.(수)
- ※ 상임위원회 예비심사
 - 2023. 06. 09.(금) ~ 06. 12.(월) - 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(집행부 원안 승인)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
 -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(2023. 06. 13.)
 -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
 -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(2023. 06. 14.)
 -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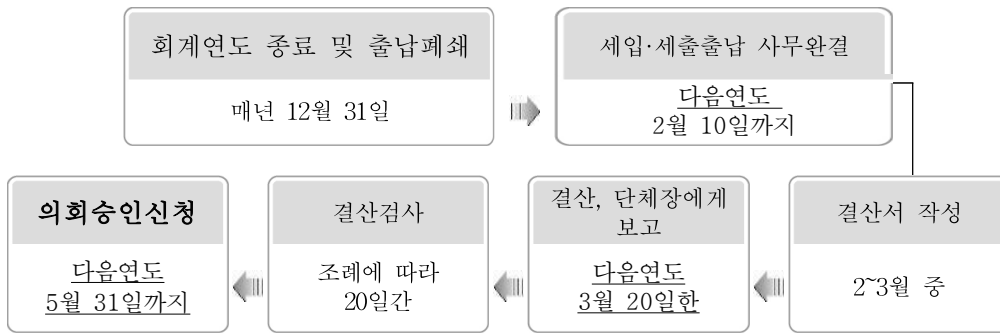
나. 결산의 의의

-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



- 결산심사·승인은 심의·의결된 예산대로,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
-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,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음

【결산업무 처리순기】



※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(결산승인)에 따라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함.

-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, 예산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가 있음¹⁾

다. 관련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- 결산 승인 근거 법령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) 기업의 경우 결산은 영업기간 동안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절차로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음.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음.

○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- 예비비 승인 근거 법령

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
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-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 근거 법령

제35조(결산)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
 하여야 한다.
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
 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
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
 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 2022회계연도 결산 현황

가. 세입결산 현황

○ 세입 총괄 현황

(단위: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| 징수결정액 (A) | 실제수납액 (B) | 불납결손액 | 미수납액 | 비율(%) (B)/(A)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총 계 | 4,244,673 | 4,571,093 | 4,387,220 | 13,602 | 170,270 | 96.0 |
| 일반회계 | 3,620,452 | 3,897,105 | 3,729,388 | 13,505 | 154,212 | 95.7 |
| 특별회계 | 624,221 | 673,988 | 657,832 | 97 | 16,058 | 97.6 |

- 2022회계연도 세입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,
 - 예산현액은 4조 2,446억원, 징수결정액은 4조 5,710억원으로,
 - 실제로는 4조 3,872억원을 수납하였으며, 136억원은 결손처분²⁾하였음

2)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재산조사 결과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등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, 납세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케 하는 처분을 말한다.

○ 일반회계 세입 현황

- 일반회계 세입은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자치단체의 조세수입과 국·도비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며,
- 전체 세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높으므로, 일반회계 세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징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.

(단위: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| 징수결정액 (A) | 실제수납액 (B) | 불납결손액 | 미수납액 | 비율(%) (B)/(A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총 계 | 3,620,452 | 3,897,105 | 3,729,388 | 13,505 | 154,212 | 95.7 |
| 지방세 | 1,512,864 | 1,694,628 | 1,617,072 | 9,479 | 68,076 | 95.4 |
| 세외수입 | 200,943 | 292,808 | 202,773 | 4,026 | 86,009 | 69.3 |
| 지방교부 세 | 42,474 | 37,128 | 37,128 | - | - | 100.0 |
| 조정교부 금 | 257,565 | 262,642 | 262,642 | - | - | 100.0 |
| 보조금 | 981,931 | 977,703 | 977,703 | - | - | 100.0 |
| 보전수입 등및내부 거래 | 624,675 | 632,196 | 632,070 | - | 127 | 100.0 |

-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,
 - 예산현액은 3조 6,204억원, 징수결정액은 3조 8,971억원으로,
 - 실제로는 3조 7,293억원을 수납하였으며, (징수율 95.7%)
 - 135억원은 결손처분하였음.

○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

(단위:백만원)

| 구 분 | 2022년 | 2021년 | 2020년 | 2019년 | 2018년 | 5년평균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예산현액 | 3,620,452 | 3,136,603 | 3,231,972 | 2,723,273 | 2,433,724 | 3,029,205 |
| 징수결정액 | 3,897,105 | 3,428,752 | 3,401,915 | 3,020,565 | 2,659,422 | 3,281,552 |
| 실제수납액 | 3,729,388 | 3,284,702 | 3,252,951 | 2,871,805 | 2,541,158 | 3,136,001 |
| 결손처분 | 13,505 | 12,247 | 7,910 | 6,739 | 9,828 | 10,046 |
| 미수납액 | 154,212 | 131,803 | 141,054 | 142,020 | 108,435 | 135,505 |
| 징수율 | 95.7% | 95.8% | 95.6% | 95.1% | 95.6% | 95.5% |

-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,
 - 징수율이 5년 평균 95.5%로 안정적인 세출재원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..
 - 결손처분의 5년 평균액이 100억원, 미수납액도 1,355억원에 달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.

○ 특별회계 세입 현황

-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·세출로서 일반 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91,671,621,550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는 예산으로,
- 2022회계연도 기준, 화성시의 특별회계는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, 11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.

(단위: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| 징수결정액(A) | 실제수납액(B) | 불납결손액 | 미수납액 | 비율(%) (B)/(A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총 계 | 624,221 | 673,988 | 657,832 | 97 | 16,058 | 97.6 |
| 공기업 특별회계 | 404,615 | 443,393 | 439,380 | 40 | 3,972 | 99.1 |
| 상수도 | 213,958 | 248,395 | 245,695 | 30 | 2,669 | 98.9 |
| 하수도 | 190,657 | 194,998 | 193,685 | 10 | 1,303 | 99.3 |
| 기타 특별회계 | 219,606 | 230,595 | 218,452 | 57 | 12,086 | 94.7 |
| 폐수종말 처 리시설 | 691 | 741 | 685 | 5 | 51 | 92.5 |
| 폐기물 처리시설 | 8,442 | 8,777 | 8,777 | - | - | 100.0 |
|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| 1,176 | 1,185 | 1,185 | - | - | 100.0 |
| 화성함백산 추모공원 | 14,035 | 16,310 | 16,310 | - | - | 100.0 |
| 도시재생 | 19,733 | 19,827 | 19,827 | - | - | 100.0 |
| 도시철도 | 105,586 | 98,123 | 98,123 | - | - | 100.0 |
| 교통사업 | 58,771 | 72,287 | 60,200 | 52 | 12,035 | 83.3 |
| 주민소득 지원사업 | 4,416 | 6,326 | 6,326 | - | - | 100.0 |
| 대지보상 사업 | 302 | 305 | 305 | - | - | 100.0 |
|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| 2,423 | 2,628 | 2,628 | - | - | 100.0 |
| 의료급여 기금 | 4,031 | 4,086 | 4,086 | - | - | 100.0 |

-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,
 - 예산현액은 6,242억원, 징수결정액은 6,739억원으로,
 - 실제로는 6,578억원을 수납하였음. (징수율 97.6%)
 -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이 타 사업 특별회계에 비해 저조함. 안정적인 세출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응마련이 요구됨.

나. 세출결산 현황

○ 세출 총괄 현황

(단위: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(A) | 지출액 (B) | 다음연도 이월액 | 보조금 반납금 | 집행잔액 | 집행률(% (B)/(A)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총 계 | 4,244,672 | 3,488,382 | 526,890 | 56,929 | 172,469 | 82.2 |
| 일반회계 | 3,620,451 | 3,015,246 | 437,942 | 56,720 | 110,542 | 83.3 |
| 특별회계 | 624,221 | 473,136 | 88,948 | 209 | 61,927 | 75.8 |

- 2022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,
 - 예산현액 4조 2,446억원 중, 3조 4,883억원을 지출 (집행률 82.2%)
 - 5,26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, 1,724억원은 불용처리됨.

○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현황

(단위: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(A) | 지출액 (B) | 다음연도 이월액 | 보조금 반납금 | 집행잔액 | 집행률(% (B)/(A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총 계 | 3,620,451 | 3,015,246 | 437,942 | 56,720 | 110,542 | 83.3 |
| 일반공공행정 | 302,519 | 262,545 | 28,339 | 163 | 11,472 | 86.8 |
| 공공질서 및 안전 | 56,066 | 46,349 | 7,069 | 213 | 2,436 | 82.7 |
| 교육 | 63,596 | 60,889 | 730 | 8 | 1,969 | 95.7 |
| 문화및관광 | 248,899 | 177,094 | 67,891 | 259 | 3,654 | 71.2 |
| 환경 | 253,982 | 217,708 | 18,367 | 6,679 | 11,228 | 85.7 |
| 사회복지 | 1,063,241 | 975,219 | 34,279 | 37,651 | 16,091 | 91.7 |
| 보건 | 84,810 | 77,902 | 203 | 4,180 | 2,526 | 91.9 |
| 농림해양수산 | 393,397 | 299,322 | 76,861 | 3,053 | 14,162 | 76.1 |
| 산업·중소기업 및에너지 | 121,335 | 105,298 | 8,053 | 1,663 | 6,321 | 86.8 |
| 교통및물류 | 635,549 | 470,233 | 145,905 | 1,414 | 17,997 | 74.0 |
| 국토 및 지역개발 | 134,847 | 81,460 | 50,245 | 1,346 | 1,795 | 60.4 |
| 예비비 | 12,111 | - | - | - | 12,110 | - |
| 기타 | 250,099 | 241,227 | - | 91 | 8,781 | 96.5 |

- 일반회계의 세출 현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,
 - 대체로 적절히 예산을 집행하였으나,
 - 문화 및 관광, 농림해양수산, 교통 및 물류,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다소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.

○ 특별회계 세출 현황

(단위: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(A) | 지출액 (B) | 다음연도 이월액 | 보조금 반납액 | 집행잔액 | 집행률(%) (B)/(A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총 계 | 624,221 | 473,136 | 88,948 | 209 | 61,927 | 75.8 |
| 공기업 특별회계 | 404,615 | 299,194 | 47,372 | - | 58,049 | 74.0 |
| 상수도사업 | 213,958 | 176,470 | 21,149 | - | 16,339 | 82.5 |
| 하수도사업 | 190,657 | 122,724 | 26,223 | - | 41,710 | 64.4 |
| 기타특별회계 | 219,606 | 173,942 | 41,576 | 209 | 3,878 | 79.2 |
| 폐수종말 처리시설 | 691 | 565 | 52 | - | 73 | 81.8 |
| 폐기물 처리시설 | 8,441 | 1,928 | 6,480 | - | 32 | 22.9 |
|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| 1,175 | 1,146 | - | - | 29 | 97.5 |
| 화성함백산 추모공원 | 14,034 | 12,808 | 1,120 | - | 106 | 91.3 |
| 도시재생 | 19,733 | 4,558 | 15,159 | 2 | 13 | 23.1 |
| 도시철도 | 105,586 | 97,272 | 8,313 | - | - | 92.1 |
| 교통사업 | 58,770 | 46,184 | 10,325 | 5 | 2,254 | 78.6 |
| 주민소득 지원사업 | 4,415 | 3,880 | - | - | 535 | 87.9 |
| 대지보상 사업 | 302 | - | - | - | 302 | - |
|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| 2,423 | 1,647 | 123 | 126 | 525 | 68.0 |
| 의료급여 기금 | 4,031 | 3,950 | - | 75 | 5 | 97.9 |

-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,
 - 예산현액 6,242억원 중, 4,731억원을 지출 (집행률 75.8%)
 - 88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, 6,192억원은 불용처리됨.

3 주요 심사사항

가. 순세계잉여금 발생(일반회계)

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되,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세수추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(예산의 편성)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여야 함.
-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재원 집행잔액의 3년 평균액이 1,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임.

(단위: 원)

| 구분 연도별 | 집행잔액 | | 초과세입금 | 순세계잉여금 (집행잔액+초과세입금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보조금사용잔액 | 시비사용잔액 | | |
| 2022년 | 27,429,875,604 | 157,820,753,061 | 142,546,522,515 | 327,797,151,180 |
| 2021년 | 16,995,212,880 | 102,135,128,352 | 148,098,912,348 | 267,229,253,580 |
| 2020년 | 15,545,658,827 | 91,456,012,205 | 20,979,183,474 | 127,980,854,506 |

나.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(일반회계)

- 한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,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.
- 집행잔액이 50억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교통행정과, 기후환경과, 복지정책과, 아동보육과 등의 부서에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※ 세부내역은 결산서 p.161 ~ p796 참조

다. 예산 이용·전용 현황

★ 예산의 이용(移用) :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
(근거법령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)

-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,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, 2022회계연도에 세출예산을 이용하지 않았음.

★ 예산의 전용(專用) :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
(근거법령 : 지방재정법 제49조)

- 예산 전용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와는 다르게,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나 여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만든 제도이나,
- 집행부에서 예산의 집행잔액을 모두 소진시키고자 기존에 없던 사업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(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)
- 이러한 맥락에서 2022회계연도에 전용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, 총 1개 부서에서 3건의 사업을 전용하였음.

(단위:원)

| 부 서 | 세부사업명 | 전용금액 | 전용승인 일 | 전용사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합 계 | | 32,000,000 | | |
| 토지 정보과 | 개별공시지가 조사·산정 (사무관리비) | 14,000,000 | 2022-11-16 | 사업추진 효율을 위한 변경 |
| | 개발부담금 부과 (사무관리비) | | | |
| |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(사무관리비) | 10,000,000 | | |
| | 개발부담금 부과 (사무관리비) | | | |
| |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(사무관리비) | 8,000,000 | | |
| | 개발부담금 부과 (사무관리비) | | | |

※ 세부내역은 결산서 p.805 ~ 807 참조.

- 예산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제도로써 일부전용의 경우 예산편성 오류 또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사업추진 등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예산의 성립이후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의 이용 및 추가경정예산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.

라. 예비비 지출 현황

★ 예비비 :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
(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)

- 2022회계연도에는 총 20개 부서에서 41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,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상회복지원금,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로 적절히 집행하였음.

○ 일반예비비 지출내역

(단위:원)

| 부 서 | 예비비 지출사유 | 지출결정액 | 지 출 액 | 이 월 액 | 집행잔액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합 계 | | 7,894,472,000 | 3,062,001,870 | 3,447,971,720 | 1,384,498,410 |
| 의회 사무국 | 장애의원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 비용 지출 | 15,000,000 | 15,000,000 | - | - |
| 안전 정책과 | 8. 8. ~ 8. 17.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| 89,600,000 | 89,600,000 | - | - |
| | 태풍 힌남노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| 57,500,000 | 20,125,000 | - | 37,375,000 |
| | 태풍 힌남노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| 14,000,000 | 3,500,000 | - | 10,500,000 |
| | 2022년 태풍으로 주택 침수 피해자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| 3,000,000 | 3,000,000 | - | - |
| | 2022년 하절기 호우 주택 침수 피해자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| 85,500,000 | 85,500,000 | - | - |
| | 2022년 하절기 호우 주택 침수 피해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| 24,000,000 | 24,000,000 | - | - |
| | 하절기 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국비 미지원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| 32,750,000 | 32,725,000 | - | 25,000 |
| 스마트 시티과 | 관내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방법용 CCTV 추가 설치 예비비 지출 | 100,000,000 | 99,982,040 | - | 17,960 |
| 소상공인 과 |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접수 프로그램 유지 보수 비용 지출 | 13,200,000 | 12,672,000 | - | 528,000 |
| |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 | 2,000,000,000 | 760,500,000 | - | 1,239,500,000 |
| | 호우피해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| 561,000,000 | 561,000,000 | - | - |

| 부 서 | 예비비 지출사유 | 지출결정액 | 지 출 액 | 이 월 액 | 집행잔액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행정 지원과 | 이태원 사고 사망 사고 합동 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 지출 결정 | 25,000,000 | 17,377,270 | - | 7,622,730 |
| | 공무직 퇴직자 퇴직급여 법 정기한 내 지급 | 356,800,000 | 356,799,420 | - | 580 |
| 회계과 | 관내 강력 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시민안전상황실 운 영비 | 21,200,000 | 20,915,900 | - | 284,100 |
| | 관내 강력 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시민안전상황실 운 영비 | 800,000 | 314,970 | - | 485,030 |
| 문화 유산과 | 관내 종교시설 대상 방역지 원금 지급 | 84,000,000 | 64,400,000 | - | 19,600,000 |
| 관광 진흥과 | 관내 관광사업체 대상 방역 지원금 지급 | 20,000,000 | 11,500,000 | - | 8,500,000 |
| 교육 청소년과 | 관내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 | 100,000 | 100,000 | - | - |
| 복지 정책과 | 취약계층 대상 코로나19 자 가진단키트 배송에 따른 용 역비 지급 | 48,707,000 | 48,707,000 | - | - |
| 여성 가족과 | 관내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안전지킴이 운영비 예비비 | 62,000,000 | 42,985,800 | - | 19,014,200 |
| | 범죄 취약가구 대상 방법 및 호신용품 패키지 지원을 위 한 예비비 | 38,202,000 | 38,202,000 | - | - |
| 아동 보육과 | 관내 민간 어린이집 대상 방 역지원금 지급 | 70,400,000 | 65,490,000 | - | 4,910,000 |
| | 관내 시립 어린이집 대상 방 역지원금 지급 | 11,100,000 | 10,600,000 | - | 500,000 |

| 부 서 | 예비비 지출사유 | 지출결정액 | 지 출 액 | 이 월 액 | 집행잔액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도로과 |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2-13 호선 토지보상비 공탁금 및 수수료 부족분 | 49,213,000 | 49,213,000 | - | - |
| 도로 관리과 | 2022~2023년 동절기 폭설 대비 제설제 긴급 추가 비축 | 900,000,000 | - | 888,967,280 | 11,032,720 |
| 건설과 | 2022년 하절기 호우로 피해를 입은 배수펌프 긴급 복구 | 20,000,000 | 20,000,000 | - | - |
| | 2022년 하절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긴급 복구 | 370,800,000 | 34,370,000 | 336,430,000 | - |
| | 2022년 하절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하천 긴급 복구 | 1,765,000,000 | 142,022,470 | 1,622,977,530 | - |
| 버스 혁신과 | 관내 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 | 320,000,000 | 297,200,000 | - | 22,800,000 |
| 첨단 교통과 |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 | 135,600,000 | 134,200,000 | - | 1,400,000 |
| 동부 교통 건설과 | 2022~2023년 동절기 폭설 대비 제설제 긴급 추가 비축 | 300,000,000 | - | 299,828,370 | 171,630 |
| 동탄 교통 건설과 | 2022~2023년 동절기 폭설 대비 제설제 긴급 추가 비축 | 300,000,000 | - | 299,768,540 | 231,460 |

○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지출내역

(단위:원)

| 부 서 | 예비비 지출사유 | 지출결정액 | 지 출 액 | 이 월 액 | 집행잔액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| | 3,994,860,000 | 3,116,645,230 | 67,638,560 | 810,576,210 |
| 안전정책과 | 8. 8. ~ 8. 17.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| 136,000,000 | 47,600,000 | | 88,400,000 |
| | 8. 8. ~ 8. 17.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| 726,000,000 | 254,100,000 | | 471,900,000 |
| | 2022년 하절기 호우 주택 침수 피해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| 288,000,000 | 288,000,000 | | |
| | 2022년 하절기 호우 주택 침수 피해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| 60,000,000 | 60,000,000 | | |
| 회계과 | 가축전염병(AI) 발생 농가 살처분 비용 및 예방적 살처분 소요 | 2,707,464,000 | 2,393,665,440 | 67,638,560 | 246,160,000 |
| 복지정책과 | 6. 30. 호우 피해 이재민 주거지원금 지급 | 73,360,000 | 71,960,000 | | 1,400,000 |
| | 8. 9. 호우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용 LH 공실 임대료 지급 | 1,636,000 | 1,066,450 | | 569,550 |
| | 8. 9. 호우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용 LH 공실 관리비 확보 | 2,400,000 | 253,340 | | 2,146,660 |

※ 세부내역은 결산서 p.837 ~ 842p 참조.

마. 예산 이월 현황

★ 예산의 이월 :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, 명시이월, 사고이월, 계속비 이월이 있음

- 명시이월 (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) - 사전에 의회 승인 필요
 -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, 그 취지를 세입·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
- 사고이월 (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) - 사전 의회 승인 불필요
 -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
- 계속비이월 (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, 제50조 제3항)
 -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
-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(일반회계)

(단위: 원)

| 구 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전년대비 증감액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이월총액 | 378,008,088,780 | 344,153,958,011 | 312,644,893,820 | 327,274,865,853 | 437,942,466,203 | 증 1,106억 |
| 명시이월 | 71,903,826,790 | 84,503,162,710 | 80,282,151,240 | 74,486,123,860 | 91,671,621,550 | 증 171억 |
| 사고이월 | 36,968,423,940 | 41,785,578,901 | 31,266,628,830 | 17,593,144,360 | 16,695,261,078 | 감 8억 |
| 계속비 이월 | 269,135,838,050 | 217,865,216,400 | 201,096,113,750 | 235,195,597,633 | 329,575,583,575 | 증 943억 |

4 심사결과

-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: 원안가결(시정요구서 별첨)
-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: 원안가결